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10. 17(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9. 23.

나. 제 안 자 : 유제홍 의원(대표발의)

- 박종우, 안영수, 공병건 의원(찬성 12인)

다. 회부일자 : 2014. 9. 24

라. 상정일자 : 2014. 10. 14

○ 제안설명 : 산업경제위원회 유제홍 의원

○ 검토보고 :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서는 부평구 부평2동에 소재한 인천가족공원 내에 화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시설은 시민들의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나 그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시설임.

○ 우리시에서는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 주민들에게도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왔으며, 주변주민들은 그동안 이로 인한 지역이미지 실추, 재산상의 손실 등의 불편을 감수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현실임.

○ 이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함 (안 제3조)

○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20 이내의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함(안 제4조)

○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기금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화장시설이 시민들의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나 그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써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

인천광역시 관내 대표 화장시설인 부평구 부평동 산57-1번지 일원의 인천가족공원내 시립승화원의 경우 1936년 남구 주안동에 설치된 시립화장장을 1977년 부평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가족공원 내 묘지는 1940년경부터 공동묘지 형태로 자연적으로 조성된 집단묘지(조성기수 : 45,926기)를 1979년부터 장묘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해 오다가 2005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현황 >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 57-1 인천가족공원 일원

○ 묘지기수 : 45,926기

○ 면적 및 사용료

- 연면적 5,608㎡, 화장로 20기, 처리능력 81기/일(예비화로 2기)
- 사용료(15세 이상 기준) : 관내 9만원/구당, 관외 100만원/구당

○ 봉안시설 : 안치규모 57,779기

- 추모의집 : 안치규모 19,320기(만장)
- 금 마 총 : 안치규모 11,275기(만장)
- 만 월 당 : 안치규모 29,184기(23,015기 안치)

○ 자연장지 : 안치규모 6,279기

- 수목장림 : 1,365기(만장)
- 잔 디 장 : 4,917기(784기 안치)

< 인천가족공원(화장시설) 위탁운영 현황>

○ 위탁근거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 인천광역시 시설관리 업무대행 위·수탁 계약(2002. 04. 16)

○ 위탁기간 : 2002. 4. 16 ~ 계약해지시까지 (1년 단위로 자동연장)

○ 위탁기관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장 외 33명)

○ 대행사업비 : 6,220백만원(2014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	5,100	5,616	5,940	6,220

○ 사업내용 : 인천가족공원묘지 운영 및 관리(계단식 조성묘, 가족봉안묘), 시립 승화원(화장장) 운영 및 관리(화장로20기), 시립 봉안당 운영 및 관리(추모의집,금마총,만월당), 유택동산, 합동무연분묘, 자연장(수목장,잔디장) 운영 및 관리

□ 인천광역시의 경우 화장(火葬)은 사망자의 85%에 도달할 정도로 대중화된 장사방법이며 인천가족공원 내에서 연간 19,000여건의 화장이 이루어 지고 있음.

<인천광역시 화장률 현황>

연 도	사망자 수(명)	화장자수(명)	화장률(%)
2010년	12,087	9,804 (9,972)	81.1 (82.5)
2011년	12,504	10,589 (10,532)	84.7 (84.2)
2012년	12,881	11,055 (10,936)	85.8 (84.9)

※ 2013년 화장통계는 2014. 11월말에 발표됨(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서 발췌)
- 괄호 표기사항은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적 대비 통계.(보건복지부와 약간의 오차가 있음)

< 인천가족공원(화장시설) 이용 실적 등 >

○ 연도별 화장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화장건수		관 내			관 외			세외수입
	전 체	평균(1일)	계	생 장	개장유골	계	생 장	개장유골	
2011	17,927	49.1	12,075	9,972	2,103	5,852	5,459	393	5,965,174
2012	21,240	58.1	15,479	10,532	4,947	5,761	5,122	639	6,095,100
2013	18,222	49.9	12,511	10,936	1,575	5,711	5,479	232	5,817,606

○ 연도별 봉안시설 안치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봉안건수		일 반	감면 대상자					
	전 체	평균(1일)		합계 (B)	수급자	유공자	가족공원묘지	무연고	총할인금액
2011	7,047	19.3	6,084	873	640	124	109	-	43,125
2012	8,038	22.0	6,971	1,124	702	159	263	-	87,150
2013	7,271	19.9	6,200	1,071	191	661	66	153	121,000

인천광역시는 2003년부터 화장시설을 현대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인천가족공원 친환경 공원화 사업(648억원)으로 쉼터, 쌈지공원 등 친수공간과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2단계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봉안당 신축(1개소)과 순환도로개설 등 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사업(498억원)을 시행중에 있음. 또한 204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2,260억원 등 총 3,406억원을 들여 인천가족공원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임.

< 인천가족공원 2단계 공원화 사업 현황 >

○ 총사업비 49,830백만원
- 봉안당 1개소 신축(36,000기), 봉안담 3개소 설치(20,087기), 자연장 4개소 설치(5,004기), 외국인 특화묘역 1개소 설치, 순환도로 개설, 쌈지공원 조성
- 보 상 : 분묘 5,000기, 토지 20필지, 지장물 등

○ 봉안당 설치 및 환경개선공사 : 총사업비 5,231백만원
- 봉안당 냉난방기 설치, 추모의 집 안치단 교체, 신규봉안당 안치단 설치

□ 화장시설은 현대화 및 친환경 공원화 등으로 화장시설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등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화장시설은 지역 이미지 실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 및 정서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혐오시설로 여겨져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도[1] 기피·혐오시설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있음.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

○ 광역자치단체

연번	지자체	조례명	조원재성방법	지원대상
1	제주도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조례	**일반회계** **- 사용료 12/100** **- 도 예산**	장사시설이 위치한 읍면동

○ 기초자치단체

연번	지자체	조례명	조원재성방법	지원대상
1	경기도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조성** **- 사용료 5/100**	지원대상 동 직접 규정
2	충 남 공주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금조성** **- 사용료 15/100** **- 시 출연금**	장사시설이 위치한 리 및 그 인접 리
3	충 남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금조성** **- 사용료 12/100**	자치단체장 결정
4	전 북 군산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금조성** **- 사용료 12/100**	규정하지 않음
5	전 북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금조성** **- 사용료 12/100**	규정하지 않음
6	전 북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금조성** **- 사용료 10/100**	자치단체장 결정
7	경 북 문경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금조성** **- 사용료 8/100**	장사시설반경 2km
8	울 산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특별회계 설치** **- 보조금 및 전입금**	자치단체장 결정
9	경기도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금조성** **- 용인시 출연금**	지원대상 면·리 직접 규정
10	강원도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반회계** **- 사용료 12/100**	장사시설이위치한 리 및 그 인접 리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등

□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 이용수수료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소득향상이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 조례 제정시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폐기물자원화시설, 하수·분뇨처리시설 등 유사한 시설[2] 주변에서도 기금설치 및 필요한 지원 요구 등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전국 화장시설 현황 >

시도 (화장장 수)	화장로 수	시도 (화장장 수)	화장로 수
서울 (2)	34 (고양 23, 서초 11)	강원 (7)	18 (춘천3, 원주2, 동해3, 태백3, 속초3, 정선2, 인제2)
부산 (1)	15	충북 (3)	16 (청주8, 충주4, 제천4)
대구 (1)	11	충남 (3)	19 (홍성8, 천안8, 공주3)
인천 (1)	**20**	전북 (4)	21 (전주6. 군산5, 익산7, 남원3)
광주 (1)	9	전남 (5)	14 (목포3, 여수4, 순천3, 광양 3, 소록도 1)
대전 (1)	10	경북 (10)	26 [포항(우현3, 구룡포1), 경주7, 김천2, 안동3, 영주2, 상주2, 문경2, 의성2, 울릉2]
울산 (1)	10	경남 (10)	39 [창원(창원4, 마산7, 진해4,), 진주7, 통영3, 사천3, 김해4, 밀양3, 고성2, 남해2]
세종 (1)	10	제주 (1)	5
경기 (3)	34 (수원 9, 성남 15, 용인 10)	**전국 (55)**	**311**

2) 발전시설, 쓰레기매립장·하치장, 고압변전소, 원자력발전소, 유류저장소, 에너지시설 등

□ 조례안의 체계

구 분	조 문
내 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금의 설치)
	제4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제9조(지원대상의 결정), 제10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수당 등), 제13조(회계공무원), 제14조(준용),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 내용별 검토

○ 목적(안 제1조)

목적 규정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에 “인천광역시”를 삽입하여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정의견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화장시설을 설치한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함으로써 그 설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안 제2조)

안 제2조는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로써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한정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장이 결정 고시 하도록 위임하고, “인접지역 중 화장시설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 또한 광범위하게 규정하였음.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입법 목적이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그 핵심인 주변지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조례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로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 기준 또는 범위의 대강이라도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대상지역을 화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0.5㎞ 또는 1㎞이내에 인접해 있는 지역 등과 같이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화장시설에 대한 정의를「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정의견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면·동 및 인접지역 중 화장시설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장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상 읍·면·동 및 인접지역 중 그 경계로부터 반경 ( )킬로미터 이내에 연접한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기금의 조성(안 제4조)

안 제4조는 기금재원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재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100분의 20이내로 규정할 경우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금 적립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인천시는 “2010년부터 인천가족공원 2단계 친환경 공원화사업 및 시설확충 등을 추진하여 현재 사용료 등 수입 대비 연평균 75억 여원의 적자(2011~2013년)를 보고 있으며, 인천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정기금[3] 조차도 재원확보가 어려워 기금을 설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립액 확보가 불투명 하다”는 입장이고,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볼 때 100분의 20이내가 합리적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천가족공원(화장시설) 세입·세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세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8,556	16,827	8,840	7,980
	봉안당 설치 및 환경개선공사			411	900
	위탁운영비	5100	5616	5940	6220
세출계		13,656	22,443	15,191	15,100
세입	장사시설 사용료 등	7,407	9,456	9,099	8,586
	입대료 수입	308	349	450	430
세입계		7,715	9,805	9,549	9,016
세입세출수지(세입계-세출계)		-5,941	-12,638	-5,642	-6,084

※ 4년간 연평균 적자액 : 75억 7,000천 600만원

3)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지방세발전기금 등

< 타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 비율 및 연간 조성규모 >

연번	지자체명	조성비율	연간조성 규모
1	- 제주도	- 사용료 12/100	39백만원
2	- 경기도 성남시	- 사용료 5/100	320백만원
3	- 충 남 공주시	- 사용료 15/100	30백만원
4	- 충 남 홍성군	- 사용료 12/100	190백만원
5	- 전 북 군산시	- 사용료 12/100	44백만원
6	- 전 북 익산시	- 사용료 12/100	80백만원
7	- 전 북 정읍시	- 사용료 10/100	시설준공(2015.12월)
8	- 경 북 문경시	- 사용료 8/100	16백만원
9	- 강원도 평창군	- 사용료 12/100	1백만원(군 출연금 20억원)

※ 울산시 울주군,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출연

○ 기금의 용도(안 제6조)

안 제6조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정의견
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공동사업 2. 주민소득향상사업 3. 주민복지증진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안 제6조(용도) 기금은 주변지역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동사업 2. 소득향상사업 3. 복지증진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의 운용계획(안 제7조)

안 제7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용어인 기금운용계획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명확성과 간결성을 등을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정의견
안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안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해마다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해야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1. 운용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사용계획 3.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지원대상사업의 결정(안 제8조~9조)

안 제8조~제9조는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협의체 구성권자인 시장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 정 안	수정의견
안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략) <신설> 2.~3.(생략) ④ (생략) ⑤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안 제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 위촉한다. 1. (제정안과 같음) 2. 대상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4.(제정안 제2호, 제3호와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 ⑤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안 제10조~제11조)

안 제10조~제11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를 15명 이하로 구성토록 함.

안 제10조 제1항은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규정하고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에서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조 제8호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장사시설을 화장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임.

안 제8조에서는 협의체에 주변지역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0조는 협의체 위원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도 위원회 위촉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주변 지역주민인 협의체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본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며 기금결산보고서는 의회의 승인 사항이므로 인천광역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부칙**

안 부칙은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례입법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위해 먼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례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3조(기금설치의 제한)”에서 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다른 조례 개정을 위해 제2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공병건, 임정빈, 박영애, 황홍구, 장현근, 조계자, 이한구 위원**

- 1977년부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도 지원을 안했으니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봄.
- 기금 조성액을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100분의 20의 금액으로 수정 필요.
-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은 안행부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설치하라고 권고하는데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답 변 〉

○ 김옥순 여성가족국장

- 가족공원을 기피시설로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친환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2005년부터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사업 진행중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친환경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임.
-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으로 수정 필요.
-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9만원, 관외 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공동 화장시설을 건립할 경우 향후 사용료 징수액이 감소할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이한구 위원장, 장현근, 박영애, 임정빈, 조계자, 공병건, 황흥구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그 설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상의 읍·면·동 및 인접지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안 제4조제1호 중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을 “100분의 10의 금액”으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용도) 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동사업
2. 소득향상사업
3. 복지증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7조 제목“(기금의 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매”를 “해마다 해당”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사용계획
3.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을 “시장 또는 위원장”으로, “인정하는 경우와”를 “인정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운영”을 “운용”으로, “장사시설”을 “화장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 본문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를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부터 제5호”를 “제2호부터 제4호”로 한다.

안 제11조제3호 중 “지원마을”를 “지원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5조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화장시설을 설치한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4조와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그 설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면·동 및 인접지역 중 화장시설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장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상 읍·면·동 및 인접지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생략) 1.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 2. (생략)	**제4조(기금의 조성)** (제정안과 같음) 1. ----------100분의 10의 금액 2. (제정안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공동사업 2. 주민소득향상사업 3. 주민복지증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6조(용도)** 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동사업 2. 소득향상사업 3. 복지증진사업 4. ---------- 인정하는 사업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 해마다 해당 ----------수립해야 --. ② (제정안과 같음) 1.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사용계획 3.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3.(생략) ④ (생략) ⑤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제정안과 같음) 2.~3.(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시장 또는 위원장 ------- 인정하거나 ----------.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인천가족공원사업단장 4. 기금운용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⑥ (생략)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운용----------화장시설----------. ②~③ (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 1. (제정안과 같음) <삭제> 2. (제정안 제3호와 같음) 3. (제정안 제4호와 같음)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⑤~⑥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1.~2. (생략)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관한 사항 4. (생략)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정안과 같음) 1.~2. (제정안과 같음) 3. ---------- 지원지역 ------ 4. (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생략)	**제13조(수당 등)** (제정안과 같음)
제13조(회계공무원) (생략)	**제14조(회계공무원)**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준용) (생략)	**제15조(준용)** (제정안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생략)	**제16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그 설치·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상 읍·면·동 및 인접지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 수익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용도) 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동사업
2. 소득향상사업
3. 복지증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해마다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사용계획
3.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한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주변지역 주민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시장은 주민지원 대상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장사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협의체 위원
2. 인천가족공원사업단장
3. 기금운용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사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기금 설치 조례

1.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2012-06-18>
4.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5.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7.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8.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2012-01-02>
9.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0.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2012-02-27>
11. <삭제 2010-01-18>
1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13.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4.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15.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